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09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정희용 · 고동진 · 박준태
주호영 · 배준영 · 김종양
김용태 · 박충권 · 진종오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4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8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3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5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u>2천만원</u>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2천만원</u> 을 공제한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 ----- ----- ----- -. ----- <u>3천만원</u> ----- ----- <u>3천만원</u>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0%;">총급여액</th><th style="width: 80%;">공제액</th></tr> <tr> <td>500만원 이하</td><td>총 급여액의 100분의 70</td></tr> <tr> <td>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td><td>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tr> <tr> <td>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td><td>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tr> <tr> <td>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td></tr> <tr> <td>1억원 초과</td><td>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td></tr> </table>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20%;">총급여액</th><th style="width: 80%;">공제액</th></tr> <tr> <td>500만원 이하</td><td>총 급여액의 100분의 80</td></tr> <tr> <td>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td><td>4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td></tr> <tr> <td>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td><td>8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td></tr> <tr> <td>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천 3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td></tr> <tr> <td>1억원 초과</td><td>1천 5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td></tr> </table>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4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8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3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5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4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8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3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5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